

질의회신

□ 답변자

소속 : 한국과학기술원 건설2팀

담당자 : 조정현 선임기술원

전화번호 : 042-350-1643

F A X : 042-350-1640

E-Mail 주소 : junghyun11@kaist.ac.kr

질의 업체	항 목 (p.00)	질의 및 답변내용
A사	광고문 p1. 광고일	최초공고의 날짜가 비어있는 바, 나라장터에 공고된 2023년 4월 4일 기준으로 서류들의 날짜를 지정해서 뽑으 면 되는지요? 답변 : 최초게시일('23년 4월 4일) 또는 변경게시일('23년 4월 5일) 두 기준으로 서류를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광고문 p3.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제출, 용 역 관련 질의 및 회신 안내	“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및 전자파일 1부(CD제출)” 라고 명시되어 있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지침에는 “※ 1)에 해당하는 일체자료 파일(CD or USB 1매,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작성지침 기준을 따라 CD나 USB 중 1매를 선택해서 제출해도 되는지요?
	다. 참가등록 구 비서류	답변 : CD or USB중 선택해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2023년 04월 07일

한국과학기술원

질의회신

□ 답변자

소속 : 한국과학기술원 건설2팀

담당자 : 조정현 선임기술원

전화번호 : 042-350-1643

F A X : 042-350-1640

E-Mail 주소 : junghyun11@kaist.ac.kr

질의 업체	항 목 (p.00)	질의 및 답변내용
B사	공고문 2P 입찰참가자격 공고일 기준 5 년이내~	1. 한국CM협회 실적증명서 제출하여 증빙 가능한지요? 답변 : 위탁받은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로 시공단계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실적을 증빙할수 있는 실적자료(배치계획표, 계약서 등 포함)이면 가능합니다. 2. CM형 감리용역실적도 인정 가능한지요? 답변 : 위탁받은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로 시공단계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실적을 증빙할수 있는 실적이면(배치계획표, 계약서 등 포함) 가능합니다. 용역명에 CM이 있다고 무조건 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3. 발주기관에서 날인한 실적증명서 1page + 해당 page~ 해당 page는 어떤것을 의미 하는지요? 답변 : 각종 실적에 대한 발주기관에서 인정한 서류를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4. 진행중 실적도 인정하는지요? 답변 : 공고일 기준전에 완료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세 부 평 가 기 준 12p	업무중첩증빙자료 제출 시 타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일 경우 각 협회에서 발급되는 확인서로 증빙 가능한지요? 답변 : 가능합니다.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미등재건에 대하여 계약서 및 배치표 사본으로 제출해도 되는지요? 답변 : 가능합니다.
	세 부 평 가 기 준 및 수행능력평 가서(서식8)	참여기술인 평가기준 중 직무분야 설계제외 평가점수 배점은 없으나 (서식8) 참여기술인 총괄표 설계제외 부분 기재항목이 있습니다. 설계제외(년/월)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 평가기준과 부합하지 않으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3년 04월 07일

한국과학기술원

질의회신

□ 답변자

소속 : 한국과학기술원 건설2팀

담당자 : 조정현 선임기술원

전화번호 : 042-350-1643

F A X : 042-350-1640

E-Mail 주소 : junghyun11@kaist.ac.kr

질의 업체	항 목 (p.00)	질의 및 답변내용
C사	공고문(p.03),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지침(p.01)	공고문상 CD제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지침상 USB제출로 명시되어 있어 상이합니다. USB로 제출하면 되는지요? 답변 : CD or USB중 선택해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공고문(p.05),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지침(p.03)	공고문에는 예정착수일이 2023.05.01.로 되어있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 지침에는 투입예정일이 2023.04.30.으로 표기되어 있어 상이합니다. 착수 예정일은 공고문기준으로 적용하면 되는지요? 재무재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원본대조필 날인시 제출 가능하다고 명시 되어 있으나,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신기술 및 특허활용실적 증명서, 참 여기술인 업무중첩 관련 배치확인서, 신규고용가점 확인서는 공고일로부터 3개 월 이내 발급한 원본을 제출가능한가요?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지침(p.14) 서식7	참여기술인 동의서 확인(자필서명/인)란에서 자필서명과 날인 중 한가지만 되 어도 되는지요? 답변 : 둘중 한가지만 확인하셔도 됩니다.

2023년 04월 07일

한국과학기술원

질의회신

□ 답변자

소속 : 한국과학기술원 건설2팀

담당자 : 조정현 선임기술원

전화번호 : 042-350-1643

F A X : 042-350-1640

E-Mail 주소 : junghyun11@kaist.ac.kr

질의 업체	항 목 (p.00)	질의 및 답변내용
C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15)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지침(p.31) 서식16	II.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3. 나. 9) 발주관서(또는, 해당내용을 증명할수 있는기관)에서 업무중첩도에서 증명할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지요? 답변 : 위탁받은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로 해당 내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이면 가능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p.05),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지침(p.22) 서식10	세부평가방법에서 유사용역수행실적 산정방법이 서식10과 상이한데, 건설사업관용역유사실적(100%), 해당분야의 건축공사업무실적(60%), 건축법·주택법상 감리실적(42%)가 맞는지요? 답변 : 건설사업관리용역 유사실적 100%, 해당분야의 건축공사업무실적 60% 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이면 70% 이며 각 경우의 따라 조합하여 실적인정을 합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지침(p.33) 서식18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제출시 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가능한가요? 답변 : 확인각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지침(p.15)	해당분야 경력 평가시 건축공사 외 건설공사업무도 평가 가능한지요? 답변 : 세부평가기준 P12와 같이 건축공사업무 실적만 인정합니다.
	공고문 (p.3) 다. 참가등록 구비서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보유현황 확인서 제출 시, 평가인원에 대한 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는지요? 답변 : 평가인원에 대해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2023년 04월 07일

한국과학기술원

질의회신

답변자

소속 : 한국과학기술원 건설2팀

담당자 : 조정현 선임기술원

전화번호 : 042-350-1643

F A X : 042-350-1640

E-Mail 주소 : junghyun11@kaist.ac.kr

질의 업체	항 목 (p.00)	질의 및 답변내용
공통		<p>기술지원기술인의 평가는 건축만 하는지 아니면 건축,토목,기계 전체를 하는지?</p> <p>답변 : 세부평가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기술지원기술인은 건축, 토목, 기계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하고 미평가지 또는 제시된 배치기준의 미달시에는 실격으로 처리합니다.</p>
<p>2023년 04월 07일</p> <p>한국과학기술원</p>		

1. 질의에 대한 대부분의 답변은 유선으로 일관되게 답변을 하였고, 공식적으로 접수된 서면질의서와 중요내용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예상치 못한 많은 민원이 유선으로 와서 질의회신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